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 17.>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공통 기준

구 분	기 준
진 료 과	한방내과 및 침구과가 필수 전문과목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영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3개과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전 속 지 도 전문의의 수	각 과에 1명 이상의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병 상 수 및 환자 진료 실적	가. 허가 병상 수 70병상 이상 나. 연간 퇴원환자 550명 이상 다. 연간 외래환자 3만명 이상(제2호에 따른 전문과목별 기준의 각 과별 외래환자 기준 중 해당 한방병원이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의 외래환자 수를 합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라. 삭제 <2024. 1. 17.>
시 설 및 기 구	가. 설치된 과의 시설 및 기구가 제2호에 따른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 합해야 한다. 나. 간호과, 영양과, 조제실, 의무기록실, 응급처치실, 한방전공의 숙 식시설과 강의실 또는 회의실이 있어야 한다.
기 타	신규 수련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의 지 정기준에 적합하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의료기관과 병상 수 100개 이상의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을 제 외하고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일반수련의의 수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전속지도 전문의의 수	연간 환자 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한 방 내 과	1명 이상	가. 퇴원환자 1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3천명 이상	가. 진료실 나. 내과 진단기기
침구과	1명 이상	가. 퇴원환자 1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3천명 이상	가. 진료실 나. 침구 진단기기
한방부인과	1명 이상	가. 퇴원환자 3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	진료실
한방소아과	1명 이상	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육아 상담 수를 포함한다)	가. 진료실 나. 소아 진단기기
한방신경 정신과	1명 이상	가. 퇴원환자 3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	가. 진료실 나. 정신요법실
한방안·이비인 후·피부과	1명 이상	가. 퇴원환자 3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	가. 진료실 나. 외관 진단기기
한방재활 의학과	1명 이상	가. 퇴원환자 1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3천명 이상	가. 진료실 나. 한방요법실 다. 한방요법기기
사상체질과	1명 이상	가. 퇴원환자 3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	가. 진료실 나. 사상 진단에 필요한 기기